

# 협력사 ESG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



주식회사 하림

[ 협력사 / 본인 ]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고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하림의 ESG 행동규범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환경경영]

협력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환경 보호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1. (환경경영 추진체계)** 협력사는 국내외 규격에서 제시하는 환경경영시스템을 기준으로 환경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경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경영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2. (환경경영 목표 수립)** 협력사는 환경경영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경영의 핵심 주제인 원부자재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용수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단기 및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및 이행점검을 위한 지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 3. (원부자재)** 협력사는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 또는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부자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천연자원 고갈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4. (온실가스 배출)** 협력사는 소유, 관리, 통제하는 사업장 등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 Scope2)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온실가스 정보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제3자 기관의 검증을 받거나 검증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5. (에너지 사용)** 협력사는 소유, 관리, 통제하는 사업장 등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외부에서 구매하는 에너지의 총사용량을 절감하고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6. (용수 관리)** 협력사는 공급받는 취수원을 보호하고 사업장 소재 지역의 수자원 고갈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취수량 및 내부 재사용량 등 총 용수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용수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7. (폐기물 관리)** 협력사는 소유, 관리, 통제하는 사업장 등에서 사업 및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높이는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8. (대기오염물질 배출)** 협력사는 소유, 관리, 통제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9. (수질오염물질 배출)** 협력사는 소유, 관리, 통제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등 수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10. (환경 법규 준수)** 협력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환경 관련 법규를 명확히 인식하고 법 관련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 및 개선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11. **(친환경 인증)** 협력사는 전체 가치사슬에서 자원 및 에너지 사용량과 환경영향을 파악하여 협력사의 제품과 서비스의 긍정적 환경영향은 확대하고 부정적 환경영향은 축소하기 위해 ISO 등 국제인증표준이나 환경부 등 정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관련 인증 및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경영]

12. **(안전보건 추진체계)** 협력사는 안전보건 리스크를 줄이고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내외 규격에서 제시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따라 안전보건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공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를 보장하는 체계(노사협의회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13. **(안전보건경영방침)** 협력사는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경영자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대내외에 공표해야 합니다.

14. **(근로자의 참여 보장)** 협력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보건 정보를 공개하고 구성원 참여절차(노사협의회 등)를 마련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5.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협력사는 산업인력 손실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보건 관련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6. **(안전보건 교육훈련)** 협력사는 안전보건 인식을 개선하고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17. **(비상 조치계획)** 협력사는 중대한 안전보건 위험요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도급 근로자 등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여 위험요인별 시나리오 및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18. **(목표수립 및 이행평가)**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주요 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문제점의 주기적인 검토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인권경영]

19. **(인권경영정책 수립)** 협력사는 UN의 ‘세계인권선언’ 및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ILO 핵심협약’, ‘OECD 책임 있는 사업을 위한 실사 가이드라인’ 등에 기반하여 인권경영 추진을 선언하는 대외 공식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20. **(차별금지)** 협력사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기타 사회적 신분 등을 사유로 고용, 승진, 교육, 보상,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21. **(근로조건 준수)** 협력사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구성원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적절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2.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구성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3. **(강제근로 금지)** 협력사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자유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근로를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24. **(아동노동 착취 금지)** 협력사는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로 인한 연소자의 교육기회를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25.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협력사는 구성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26. **(산업안전 보장)** 협력사는 구성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27. **(지역주민 인권 보호)** 협력사는 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거주환경, 안전보건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28. **(고객 인권 보호)** 협력사는 사업 활동 과정에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29. **(인권 리스크 관리)** 협력사는 인권 리스크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일정 등의 체계를 구축하여 인권 리스크 진단 및 평가, 실사, 개선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노동]

30. **(일자리 창출)** 협력사는 신규 채용을 통해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축적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성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1. **(고용 안정)** 협력사는 창출한 부가가치를 채용에 투자하여 지역사회의 고용 안정성 증가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2. **(임직원 교육)** 협력사는 미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임직원 교육훈련에 충분히 투자를 해야 합니다.
33. **(복리후생)** 협력사는 임직원의 업무환경 및 근무조건 개선을 통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히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연차휴가,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법정 복리후생 외에도 자율적으로 의료비 지원, 경조사 지원, 심리상담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4. **(결사의 자유 보장)** 협력사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35. **(노사협력)** 협력사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노사 파트너십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6. (다양성 및 양성평등) 협력사는 중장기적 성장 및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에 필요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모든 직급의 구성원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윤리경영]

37. (윤리규범) 협력사는 구성원 및 해당 조직과 거래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공표해야 합니다.

38. (윤리경영) 협력사는 구성원의 윤리규범 위반 행위(부당한 이익이나 뇌물의 수수, 불공정 경쟁 및 거래, 제품/서비스 책임 소홀, 구성원 상호 간 모독 및 비하, 기타 사회적 책임 등)를 관리 감독하고 구성원의 윤리규범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9. (공정거래) 협력사는 국내외 불공정경쟁행위의 규제 체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반경쟁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적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여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0. (내부고발제도) 협력사는 내외부로부터의 공익제보를 수용하는 창구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접수된 공익제보의 진위를 파악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익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장치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지역사회]

41. (사회공헌) 협력사는 지역사회로부터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획득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공동의 환경/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활동에 앞장서는 등 전략적 사회공헌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공헌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42. (구성원 봉사활동) 협력사는 봉사활동 참여 의지가 있는 구성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해야 하며 구성원의 자율적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기획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정보보호]

43.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협력사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산 등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자산 해킹, 네트워크 침입 등의 외부 공격과 물리적/인적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44.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협력사는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 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ESG 리스크 관리에 대한 협조]

45. (하림의 ESG 리스크 관리에 대한 협조) 서약자의 ESG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하림은 ESG 정기 진단을 실시하고 행동규범 준수 검증을 위해 현장 방문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과정에서 서약자는 (주)하림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 방문 실사를 통해 서약자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서로 협의한 기한 내에 시정조치 및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 협력사 / 본인 ]은 ESG 행동규범 준수 서약을 위반한 경우 (주)하림이 그 위반 정도 및 내부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조치(거래 물량 제한, 계약 중단 또는 종료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